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. 12. 9 선고 2017가단218729(본소), 2017가단221411(반소) 판결
[지체상금 청구의 소 · 공사대금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

담당변호사 최황선, 서은경, 변영철

피고(반소원고)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한

담당변호사 김해린, 곽동진, 박재현

변 론 종 결 2020. 10. 7.

판 결 선 고 2020. 12. 9.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 141,516,184원과 이에 대하여 2017. 10. 24.부터 2020. 12. 9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청구와 피고(반소원고)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80%는 원고(반소피고)가, 나머지는 피고(반소원고)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1. 본소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고만 한다)에게 51,841,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10. 23.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반소

원고는 피고에게 244,404,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10. 24.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.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는 2017. 3. 15.경 원고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‘D 공동주택’의 신축공사 중 20층(지하 1층, 지상 19층) 부분에 대한 철근콘크리트공사(이하 ‘이 사건 공사’라 한다)를 공사대금 1,246,000,000원(부가가치세 별도), 공사기간 2017. 5. 4.부터 2018. 1. 20.까지, 지체상금 1일 지체 시마다 계약금액의 0.1%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(이하 ‘이 사건 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나. 피고는 2017. 5. 4.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7. 10. 23.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.

다. 원고는 피고에게 2017. 6. 14.경부터 2017. 9. 28.경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358,815,700원을 지급하였다.

라. 원고는 2017. 11. 5.경 별도로 다른 공사업자인 E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미기성 부분을

540,000,000원(부가가치세 별도)에 도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를 2018. 3. 15.경 완료하였다.

마. 한편,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알루미늄폼(이하 ‘알폼’이라 한다) 및 갱폼(이하 알폼과 함께 ‘알폼 등’이라 한다)의 설치 및 해체 공사(이하 ‘알폼 등 공사’라 한다)도 포함되어 있었는데, 피고가 알폼 등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, 이에 원고는 F 주식회사에게 알폼 등의 대금으로 2017. 10. 31.경부터 2018. 2. 28.경까지 합계 243,801,745원을 지급하였다.

[인정 근거] 갑 제1 내지 9호증, 을 제1, 7 내지 12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 및 영상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들의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

1)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기시공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는 599,310,000원(기성고 비율 48.1%)인데, 원고가 이미 358,815,7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, 현재까지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은 240,494,300원이다.

2)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알폼 등의 대금을 부담하여야 하는데,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대금을 지급하였다.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2017. 10. 23.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알폼 등의 대금은 82,157,116원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82,157,11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.

3) 피고가 약정한 기한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으로 67,284,000원(2018. 1. 21.부터 2018. 3. 15.까지 지체일수 54일에 대한 지체상금)을 지급하여야 한다.

4) 또한, 피고가 시공한 공사 중 주차타워 공사부분에 부실시공의 하자가 있었는데, 그 보수에 13,311,360원이 소요되고, 알폼 등의 공사부분에도 부실시공의 하자가 있었는데, 그 보수에 28,073,405원이 소요되는바,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5) 나아가, 피고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준공이 늦어져 위 ‘D 공동주택’에 관하여 체결되었던 분양계약자 G 등 4인(이하 ‘이 사건 분양계약자들’이라 한다)의 분양계약이 각 해지되었다. 이에

원고가 합계 101,510,375원의 계약금을 이 사건 분양계약자들에게 반환하는 손해를 입었는바,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반환된 계약금 101,510,375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6) 결국 공제, 상계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51,841,956원{- 51,841,956원 = 미지급 공사대금 240,494,300원 - (알폼 등의 대금 82,157,116원 + 지체상금 67,284,000원 + 주차타워 공사부분 하자보수 공사비 13,311,360원 + 알폼 등의 공사부분 하자보수 공사비 28,073,405원 + 원고가 반환한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101,510,375원)}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본소로서 그 지급을 구한다.

나. 피고의 주장

- 1) 이 사건 공사 중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는 603,220,000원(기성고 비율 48.4%)인데, 원고로부터 이미 358,815,7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, 현재까지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은 244,404,300원이다.
- 2) 피고의 공사 지체 및 중단의 원인은 원고의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대금 지급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귀책사유가 없고,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하자보수 공사비나 손해배상청구 등도 인정할 수 없다.
- 3) 또한 이 사건 계약에 알폼 등 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, 계약 체결 후 원고와 피고는 기성 공사대금에서 원고가 지급한 알폼 등의 대금을 공제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하였으므로, 원고의 알폼 등 대금에 관한 청구는 부당하다.
- 4)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 잔금 244,404,3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반소로서 그 지급을 구한다.

3. 판단

가. 미지급 공사대금 부분

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358,815,7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의하면,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

중단한 2017. 10. 23. 기준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는 599,310,000원, 기성고 비율은 48.1%임1)을 알 수 있는바,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는 599,310,000원에서 기지급한 358,815,700원을 공제하고 남은 240,494,300원이다.

나. 알폼 등 대금 부분

이 사건 계약에 알폼 등 공사도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이에 따라 알폼 등의 대금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(이에 대하여 피고는, 당초 이 사건 계약에 알폼 등 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, 이후 원고와 피고는 기성 공사대금에서 원고가 지급한 알폼 등의 대금을 공제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). 한편,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,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2017. 10. 23.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알폼 등의 대금은 82,157,116원임을 알 수 있고, 원고가 알폼 등의 대금을 F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, 결국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위 알폼 등의 대금 82,157,116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다. 지체상금 부분

1) 이 사건 계약에서 준공일 2018. 1. 20., 공사대금 1,246,000,000원, 지체상금율 1일당 1/1000로 정하여져 있고, 피고의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후에 E 주식회사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잔여공사가 이루어졌는데, 그 잔여공사는 2018. 3. 15. 완공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권은 67,284,000원{= 지체일수 54일(이 사건 계약에 따른 준공일 다음날인 2018. 1. 21.부터 위 잔여공사가 완공된 날인 2018. 3. 15.까지) × 공사대금 1,246,000,000원 × 지체상금율 1/1000}이 됨을 알 수 있다.

2) 이에 대하여 피고는,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대금 지급지체 등 원고의 귀책사유 때문에 지체 및 중단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공사기간 중 대금 지급을 둘러싼 원고와 피고의 다툼 등의 사정은 있으나 그것이 지체상금 감액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

넘어서 원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, 전체적인 경위 등에 비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공사 지체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) 다만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,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,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, 계약의 목적과 내용,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,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,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(대법원 1999. 10. 12. 선고 99다14846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에서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공사기간 중 대금 지급을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점, 원고의 설계변경이 알폼 등 공사의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할 경우, 위와 같이 인정된 지체상금액 67,284,000원은 일반 사회관념 등을 참작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, 이를 그 25%인 16,821,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한다.

라. 하자보수공사대금 부분

1) 원고는, 피고가 시공한 공사 중 주차타워 부분에 부실시공의 하자가 있었고, 그 보수에 13,311,360원이 소요되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,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2) 또한 원고는, 피고가 시공한 공사 중 알폼 등의 공사부분에 부실시공의 하자가 있었고, 그 보수에 28,073,405원이 소요되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,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.

마. 계약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

원고는, 피고의 위법한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준공이 늦어져 이 사건 분양계약자들과 사이에서 체결된 분양계약이 모두 해지되었고, 이에 원고가 합계 101,510,375원의 계약금을 이 사건 분양계약자들에게 반환하는 손해를 입었는바,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1,510,375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. 살피건대, 갑 제12,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자들과 체결된 위 분양계약이 각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바. 소결론

그렇다면 피고의 공사 잔금채권 240,494,300원에서 원고의 지체상금채권 16,821,000원 및 원고가 대신 지급한 알폼 등 대금 상당의 채권 82,157,116원을 서로 대등액에서 공제 또는 상계하고 나면, 결국 141,516,184원(= 240,494,300원 - 16,821,000원 - 82,157,116원)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 잔금채권이 남는다.

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, 피고의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공제 또는 상계를 거친 나머지 공사대금 141,516,184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단일 다음날인 2017. 10. 24.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. 12. 9.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,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,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황성광

1) ‘갥폼의 설치 및 해체에 들어간 비용’까지 공사대금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, 감정인이 이 사건 공사

중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기성고 비율을 재산정한 것임.